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로의 후원금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해운대구 “○○○○○○○○○○센터” 등 2개 시설은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 1】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사회복지시설

구/군	구분 (법인/시설)	법인/시설명	후원금수입및 사용결과보고	비 고
해운대구	시설	○○○○○○○○○○센터	보고	개인계좌명 (시설계좌또는시설장 명의로아님)
금정구	시설	○○○○○○원	보고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연제구 “○○○”은 2014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표 2】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 현황

구명	법인/시설	법인/시설명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비 고
			보고 여부	보고 일자	보고 여부	보고일자	
연제구	법인	○○○	미보고	-	보고	2016-02-24	미보고/공문

조치할 사항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은

[시정]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등 법령 위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청장은

[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